KOSHA GUIDE

C - 96 - 2014

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평균으로 한다.

- (4)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,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하다.
- (5) 도급인은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구조검토를 의뢰하는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설계변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설계변경 불승인 사유로 인하여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(6)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각종 간접경비의 산출은 수급인이 계약당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한다.

6.4 행정서류의 정리

- (1)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안전성 판단을 요청받은 전문가는 당초의 설계서와 현장조건을 검토하여 구조검토를 하는 등 객관적인 기술 기준을 근거로 설계변경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(가) 설계변경이 필요한 기술적 판단근거
 - (나) 설계변경(안)
 - (다) 설계변경(안)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판단 근거
- (2) 설계변경이 필요한 기술적 판단은 구조계산을 통한 불안전한 상태의 판단 또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.
- (3)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- (가)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)
 - (나)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
 - (다)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